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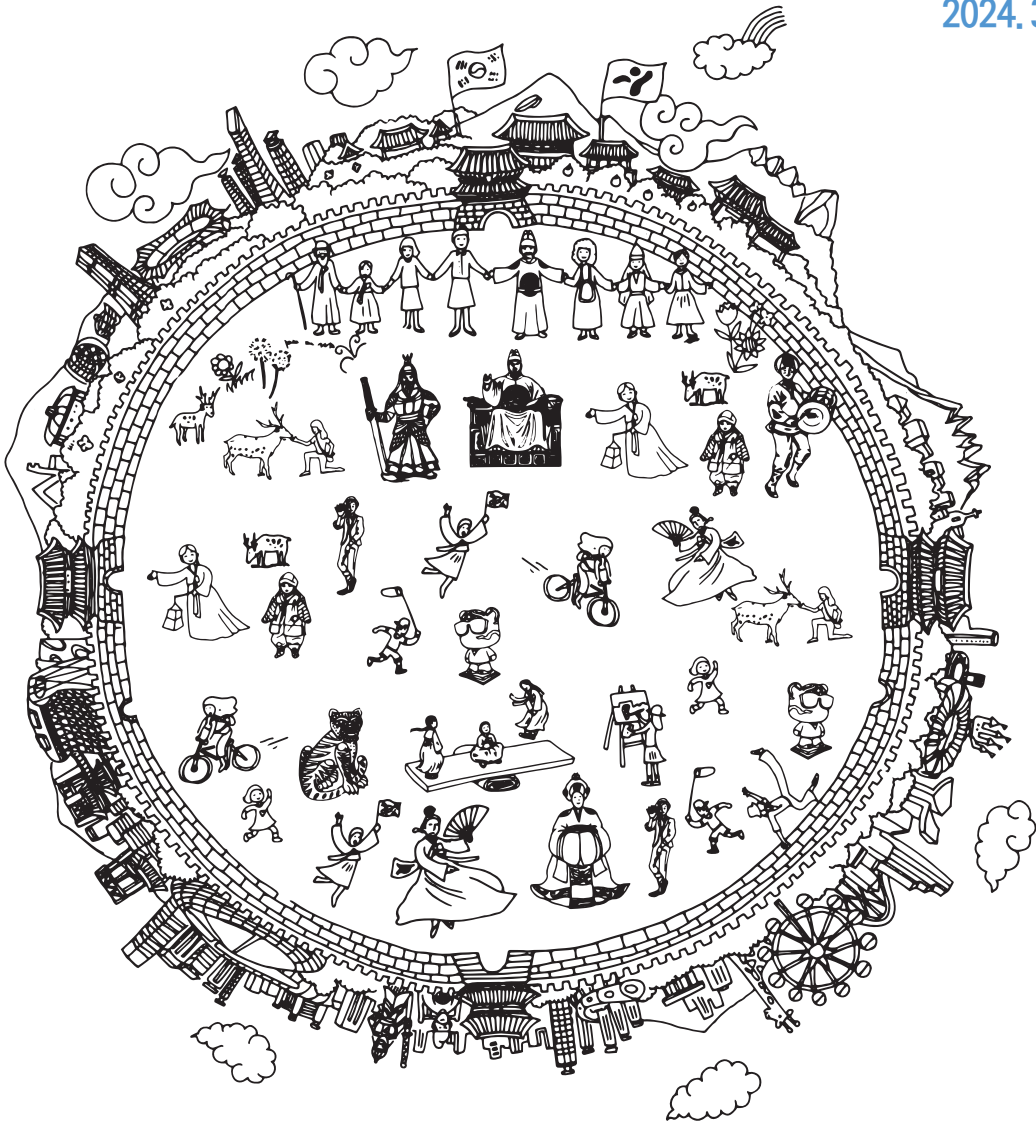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58호
2024. 3. 8.(금)



목 차**◆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제2024-731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4-74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24-741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731호****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 감액(안 제6조제2항제4호)
- 나.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경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전화: 02-2133-5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이메일 : cjs9041@seoul.go.kr
- (2) 우 편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9층
-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생략)	제6조(관람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74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게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에 한한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원여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여가정책과(전화: 2133-2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이메일 : shicklion10@seoul.go.kr
- (2) 우 편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14.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에 한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741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에 추가하여 시 주요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추가함(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과(전화: 02-2133-4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박물관과
- 2) 이메일 : nope01@seoul.go.kr
-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 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을 “기획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 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
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 ④ 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관람료)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u>기획전시</u>에는 <u>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 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u>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생략)	제8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기획전시</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 ----- ----- ----- 1. <u>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 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u> 2. <u>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u> ④ 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u>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u>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